

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] <신설 2020. 1. 7.>

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(제10조의3제1항제2호 관련)

구분	세부기준
1. 시설	가. 전용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 하나 이상 나. 실습을 위한 장비가 갖춰진 실습장 하나 이상
2. 인력	가.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교수요원 나.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·관리하는 전담 관리자 1명 이상